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09 - 호

『사단법인 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 지원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7월 10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사단법인 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·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·관리 및 육성 등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-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(2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(참조: 시의회 문교사회전문위원실, 전화: 032-440-6224, 팩스: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사단법인 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1부.

사단법인 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전승·보존·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재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(이하 “총연합회” 라 한다)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(이하 “시 지정무형문화재” 라 한다)라 함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연극·음악·무용·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말한다.

제3조(보조금의 지원 등) 시장은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·관리 및 육성 등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범위) 총연합회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
2.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3. 시지정무형문화재 관련 시설물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항
5. 기타 총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